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- 주야간보호 -

제1조(계약목적) 기관과 수급자(또는 보호자) 간의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제공,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명확히 정하고, 서비스 제공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계약 이행을 도모한다.

제2조(계약 체결 및 계약기간)

- ① 계약 시 필요한 서류는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,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으로 하며, 서류 접수 후 기관의 자격 확인 및 급여계획 수립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.
- ② 기관은 집단생활에 따른 감염병 예방 및 안전한 급여 제공을 위하여 계약 전 수급자(또는 보호자)에게 전염성 질환 유무나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며, 필요시 의사소견서 등 추가 확인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③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계약할 때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이 발행한 「장기요양기관 입소·이용의뢰서」 및 「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」를 사전에 제출받아 전산 승인을 완료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④ 계약은 수급자(또는 보호자)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2부를 작성하여 체결하며,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기간을 명시한다. 작성된 계약서는 기관과 수급자(또는 보호자)가 각각 기명날인 후, 1부는 수급자(또는 보호자) 측에 지체 없이 교부하여야 한다.
- ⑤ 기관은 급여계약이 체결되면 지체 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정보시스템(포털)에 계약 내역을 전산 등록하여야 한다.
- ⑥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기관은 재계약 여부를 수급자(또는 보호자)에게 확인하고, 수급자(또는 보호자)는 계약 만료일까지 이에 대한 회신을 하여야 한다.
- ⑦ 관계 법령에 따라 급여비용이 변경된 경우, 해당 변경사항은 별도의 계약서 수정 없이도 계약 내용에 반영된 것으로 본다.
- ⑧ 수급자(또는 보호자)가 이용 종료(퇴소) 의사를 밝힌 경우, 또는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계약은 종료된다.

제3조(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)

- ① 수급자(또는 보호자)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관계 법령에 따른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비용으로 한다.
- ②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은 관계 법령, 관계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.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, 그 초과 비용은 관계 고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급자(또는 보호자)가 전액 부담한다.
- ③ 비급여 항목(식사재료비, 간식비, 이·미용비 등)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장이 정한다. 또한 수급자(또는 보호자)의 명시적인 요청에 따라 기관이 대리 구매한 개인 일상 소모품 등의 비용은 영수증 등 객관적 증빙에 근거하여 실비로 청구할 수 있다.
- ④ 수급자(또는 보호자)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돕기 위하여 기관 내 잘 보이는 곳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상시 안내한다.

제4조(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)

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

1. 수급자에 대한 주야간보호 급여제공 내용, 비급여 사용 내역 및 건강 기록 확인 권리
2. 수급자의 건강 상태, 상태 변화, 기관 생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3.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하고 의견을 개진할 권리
4. 수급자(또는 보호자)가 함께 서비스 급여제공계획을 결정 및 변경할 권리

② 신원 인수인의 의무

1. 수급자의 건강상태, 질환, 성향, 기저질환 등 급여 제공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확히 제공할 의무
2. 수급자의 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(식대 등)을 지정된 기한 내 납부할 의무
3. 주소지, 연락처 등 인적 사항 변경 시 기관에 즉시 통보할 의무
4. 정해진 이동서비스(송영) 시간 및 장소에 맞춰 수급자의 등·하원을 협조할 의무
5. 수급자의 병원 외래 진료, 입원, 긴급 상황 발생 시 간호·간병, 입·퇴소 절차 이행 및 비용을 부담할 의무

제5조(계약의 해지) 기관은 수급자(또는 보호자)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원칙적으로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단, 타 수급자 및 종사자에 대한 폭언·폭행·성희롱, 법정 감염병 감염, 심각한 자해·타해 위험 등 '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시설장이 판단하는 긴급한 경우'에는 유예기간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급자(또는 보호자)가 타 수급자나 종사자에게 폭언, 폭행, 성희롱, 인권침해 등을 행하여 기관의 질서와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가한 경우
2. 관계 법령에 따른 법정 감염병 보고자 또는 확진자로 판정되어 다른 수급자 및 종사자의 감염 위험이 높고 필요한 예방 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
3. 행동의 불안정, 질환 악화, 타 질환 발생, 무단 가출, 안전사고 위험 등으로 주야간보호 서비스 제공이 매우 어려움에도 수급자(또는 보호자)의 협조가 없는 경우
4. 의료기관의 진단 등에 의해 자해·타해 위험이 매우 높아 기관의 예방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른 수급자, 종사자 및 본인의 생명·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
5. 수급자의 건강·질환 등 중대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한 경우
6. 계약서 작성 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경우
7.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을 3회 이상 연체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
8. 고의로 기관의 시설물, 비품, 집기 등을 파괴 및 훼손한 경우
9. 수급자가 관계 법령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이 취소되거나 등급을 받지 못한 경우

제6조(안전한 서비스 환경 조성)

- ① 수급자(또는 보호자)에 의한 폭언, 폭행, 명예훼손, 허위사실 유포 등의 행위가 발생할 경우, 기관은 즉시 경고 조치를 취하고, 필요시 법적 조치 및 계약 해지를 진행할 수 있다.
- ② 기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자(또는 보호자)로부터 종사자가 폭언, 폭행, 성희롱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, 즉시 가해자와 피해 종사자를 분리 조치하며, 피해 종사자에게 업무 전환, 심리상담 지원, 유급휴가 부여 등 법정 보호 의무 조치를 적극 이행한다.
- ③ 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행정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행하며, 기관은 수급자(또는 보호자)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.

제7조(기타)

- ①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른다.
- ②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, 관할 행정기관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한다.